

1. 의결주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함(안 제25조의2)
- 나. 법 제36조의4제6항에서 위임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으로 한다.

제25조의2와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 지정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응급의료 또는 보건의료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위한 기준·절차 및 위탁기관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3(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 교육에 적합한 교육과목 및 내용을 갖출 것
3.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3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
나.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
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2급 응급구조사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업무 교육에 적합한 교육과목 및 내용을 갖출 것

3.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 ~ ③ (생략)	제25조(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25조의2(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응급의료 또는 보건의료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

<신 설>

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위한 기준·절차 및 위탁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3(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교육에 적합한 교육과목 및 내용을 갖출 것

3.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3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소방공무원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

나.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

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u>다른 해양경찰교육원</u> <u>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u> <u>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u> <u>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u> <u>의 공무원, 「소방공무원</u> <u>법」에 따른 소방공무원,</u> <u>「군인사법」에 따른 군</u> <u>인, 「경찰공무원법」에</u> <u>따른 경찰공무원을 2급 응</u> <u>급구조사로 양성하기 위한</u> <u>기관</u> <u>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u> <u>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u> <u>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u> <u>는 기관</u> <u>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u> <u>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업무</u> <u>교육에 적합한 교육과목 및</u> <u>내용을 갖출 것</u> <u>3.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u> <u>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u> <u>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u> <u>출 것</u>
--	--